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84호 2021. 8. 20.(금)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1-1417호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고성군 공고 제2021-1432호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7
고성군 공고 제2021-1441호 「고성군 이장임면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5
고성군 공고 제2021-1442호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1-239호 지형도면 고시(삼산304호선:사회복지시설 진입도로)	19
고성군 고시 제2021-245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0
고성군 고시 제2021-247호 이당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22
고성군 고시 제2021-248호 제일농공단지계획(변경)고시	42
고성군 고시 제2021-250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58

회 람									
--------	--	--	--	--	--	--	--	--	--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1-1417호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방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민원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민원봉사과장 공간정보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 2) 전화: (055)670-2771, 팩스: (055) 670-21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
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 [전화:(055)670-277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수료) 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수수료) ①수수료는 <u>군 수입증지로 하며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u></p>	<p>제12조(수수료) ① <u>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u></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1-1432호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0.

고 성 군 수

1. 제정 이유

고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정 목적·정의·책무(안 제1조~제3조)
-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4조)
-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의견 제출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주민생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 2) 전화: (055) 670-2652 팩스: (055) 670-2359

다. 의견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 055-670-26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고령·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지원,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통합돌봄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시행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한다.

1. 통합돌봄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통합돌봄을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내용
3. 통합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돌봄 대상) ① 통합돌봄 대상자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고령·장애·질병·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지역사회복귀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그 밖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통합돌봄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돌봄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가요양 및 돌봄 등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지원사업
2.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필요한 주거 지원 사업

4.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돌봄 및 생활편의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통합돌봄 안내창구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 안내창구에서는 읍·면단위 통합돌봄사업 수행 및 주민의 참여를 통한 돌봄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통합돌봄추진단 설치) 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통합돌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 1. 통합돌봄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2. 통합돌봄 제공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추진단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1. 통합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통합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통합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의 대표자
-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업무와 관련된 비밀 누설하거나 사적이익에 이용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등) ① 추진단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단 회의에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군민의 참여) ① 읍·면 또는 마을 단위 특색에 맞는 돌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군민의 참여 확산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역사회 통합돌봄 마을 선정 및 비용 지원(안 제8조)
- 연간 재정소요액 : 150,000천 원정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사업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마을 14개소
- 2) 사업규모:
 - 회화면(경남형커뮤니티케어시범): 20,000천 원(면단위 돌봄사업)
 - 13개 읍면(회화면 제외): 마을단위 돌봄사업(26개마을, 1개소 5,000천 원 정도)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 원)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구분	세입						
	군비						
	세출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군비						

다.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 편성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재원 조달	의존재원						
	자체재원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기 타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작성자: 주민생활과장 구 원 석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1-1441호

고성군 이장임면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성군 이장임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이장 임명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개선사항을 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
- 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확인 불가한 결격사유 관련 조항 삭제
- 다. 이장의 임명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장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근거하여 제명 변경
 - (기존) 고성군 이장임면에 관한 규칙
 - (변경)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나. 이장 임명자격 명확화 및 절차 구체화: 안 제2조, 제4조
- 다. 법적 근거가 없어 확인 불가한 조항 등 삭제: 안 제3조, 제5조
- 라. 구비서류 간소화: 안 제6조

3. 의견 제출

- 가.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행정과 행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행정과 행정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과

2) 전화: (055)670-2105 팩스: (055)670-2109

라.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과장 행정담당 [전화: (055)670-21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이장임면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끝.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이장임면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고성군 이장임면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사람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출일 기준 당해 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제4조(구비서류)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력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이장 임명자격, 절차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행정과장 박 문 규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개정 2010. 11. 2.>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이장임면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1-1442호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초등돌봄 관련 범정부적인 온종일 돌봄사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

○ 온종일 돌봄 정의 및 돌봄 시설 신설

- 안 제2조

○ 다함께 돌봄→온종일 돌봄으로 용어 정비

-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교육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우 52943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전화: 055-670-4653, FAX : 055-670-46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붙임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를 “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다함께” 를 “온종일” 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온종일 돌봄” 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 활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되는 필요한 교육·보호·활동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 이란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

라.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 을 “온종일” 로, “수립하여 시행해야” 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 을 “온종일” 로, “지원 방안” 을 “지원에 관한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지역” 을 “온종일” 로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4조의 제목 “(다함께 돌봄 지원)” 을 “(온종일 돌봄 지원)” 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다함께” 를 “온종일” 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다함께 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 을 “(온종일

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 돌봄” 을 “온종일 돌봄”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청” 을 “고성교육지원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다함께” 를 “온종일” 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성군 <u>다함께 돌봄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다함께 돌봄</u>”이란 <u>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에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u></p> <p>3. (생 략)</p> <p><u><신 설></u></p>	<p><u>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온종일</u> ----- -----.</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온종일 돌봄</u>”이란 <u>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되는 필요한 교육·보호·활동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4. “<u>돌봄 시설</u>”이란 <u>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u></p> <p>가. 「<u>아동복지법</u>」 제52조에 따른 <u>지역아동센터</u></p> <p>나. 「<u>아동복지법</u>」 제44조의2에 따른 <u>다함께돌봄센터</u></p> <p>다. 「<u>청소년기본법</u>」 제48조의2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에</u></p>

제3조(종합계획)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1. 지역 돌봄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
- 2. 지역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 3. 제5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방안

<신 설>

- 4. 그 밖에 지역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생략)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군수는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센터

라.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

제3조(종합계획) ----- 온종일 -----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

-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 2. 온종일 ----- 지원에 관한 사항
-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 5. ----- 온종일 -----

제4조(온종일 돌봄 지원) (현행과 같음)

<삭 제>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지원

4.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5. 아동의 안전한 보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다함께 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 (생략)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정보 교류 및 돌봄 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고성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생략)

제12조(협의체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

<삭 제>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온종일 -----.

제10조(온종일 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
온종일 돌봄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체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 ~ 4. (생 략)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 돌
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1. 고성교육지원청-----

2. ~ 4. (현행과 같음)

③ ----- . 다
만-----

-----.

④ -----

----- 온종일 -----

-----.

<삭 제>

참고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는 초등돌봄 관련 범정부적인 온종일 돌봄사업에 대해 유관기관간 협력을 위한 조례로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1-239호

지형도면 고시(삼산 304호선:사회복지시설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삼산 304호선(사회복지시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도로의 노선지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군관리계획(기반시설: 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8. 12.

고 성 군 수

□ 지형도면 고시 사항

1. 고성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21	4~5	국지 도로	504	삼산면 판곡리 산143-3	삼산면 판곡리 321	일반 도로	-	-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소로3-121	○ 노선 신설 - 연장 504m, 폭원 4~5m	○ 삼산면 판곡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로 진입하는 현황도로로 확·포장공사를 통해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차량 및 이용객들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군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자 함.

2. 지형도면 고시도: 게재 생략

고성군 고시 제2021-245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2.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17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고성읍 죽계리 376-3	고성읍 죽계2길 474	2021.08.11.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죽계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2	회화면 배둔리 107	회화면 남해안대로 3795-17	2021.08.11.	건물번호부여신청	남해안을 잇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부여	
3	영오면 오서리 1230-7	영오면 오서1길 31-17	2021.08.11.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영오면 오서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4	영현면 추계리 199	영현면 부포로 353	2021.08.11.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상리면 부포리)을 이용하여 부포로로 명명	
5	기월리 449-1, 449-3	고성읍 기월2길 161	2021.08.11.	건물번호부여신청	기월길의 시작지점에서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6	개천면 좌연리 419-1	개천면 좌연4길 185	2021.08.11.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개천면 좌연리)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	
7	구만면 저연리 249	구만면 저연6길 27	2021.08.11.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구만면 저연리)을 이용하는 여섯번째 도로	
8	회화면 봉동리 17	회화면 봉동9길 74-1	2021.08.11.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회화면 봉동리)을 이용하는 아홉번째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구만면	구만면 저연6길 27	2021.08.10.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고성군 고시 제2021-247호

이당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 이당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055-670-2344),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8. 19.

고 성 군 수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이당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가. 특정 산업 의존도 완화를 위해 고성군 차기먹거리산업인 항공기산업 관련 부품 전문기업 유치 선점 및 투자 촉진
- 나. 고성군의 장기 지속적 발전 가능한 경제구조 구축 및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 다.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일원에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 및 산업용지 추가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91-13번지 일원
- 나. 면 적 : 130,60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가. 개발기간 : 2018년 ~ 2022년 12월 31일
-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고성군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전	답	과	구	대	임	도	기타	
필지수	당초	154	14	87	3	4	3	7	34	2
	변경	152	14	85	3	4	-	7	34	5
면적 (㎡)	131,607	10,637	83,090	5,943	6,801	1,404	16,544	5,465	723	
구성비 (%)	100.0	8.1	63.6	4.6	5.2	1.1	12.6	4.2	0.6	

나.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 계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비 고
필지수	152	59	81	12	-
면 적(㎡)	130,607	27,608	91,324	11,675	-
구성비(%)	100.0	21.2	69.9	8.9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30,607	130,607	100.0	100.0	-
산업시설용지	69,395	69,395	53.1	53.1	-
지원시설용지	3,780	3,780	2.9	2.9	-
공공시설용지	57,432	57,432	44.0	44.0	-
주 차 장	7,722	7,722	5.9	5.9	-
도 로	10,496	10,538	8.0	8.0	-
공 원	21,091	21,049	16.1	16.1	-
녹 지	15,341	15,341	11.7	11.7	-
오수처리시설	929	929	0.7	0.7	-
저류지	1,853	1,853	1.4	1.4	-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 계획

(가)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계	기정	6 (1)	1,298 (536)	20,367 (10,200)	-	-	-	5 (1)	1,280 (536)	20,280 (10,200)	1	18	87
	변경	6 (1)	1,307 (536)	20,409 (10,200)	-	-	-	5 (1)	1,280 (536)	20,280 (10,200)	2	27	129
중로		3 (1)	1,177 (536)	19,456 (10,200)	-	-	-	3 (1)	1,177 (536)	19,456 (10,200)	-	-	-
소로	기정	3	121	911	-	-	-	2	103	824	1	18	87
	변경	4	130	1,013	-	-	-	2	103	824	2	27	129
가각 및 기타(㎡)			363(329)										

※ ()는 산업단지의 사업

(나) 도로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계				기정	-	744	-	-	-	-	-	-
				변경	-	1,298	-	-	-	-	-	-
중로 소계(3개소)					-	1,177	-	-	-	-	-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200	중로1-18	교사리 917번지	일반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지구의 수도시설 중복결정 (77㎡)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441	중로2-1	중로2-1	일반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기정	중로	2	14	15	보조간선	536	중로1-10	중로1-15	일반도로	-	-	단지의 진입도로
소로 소계(4개소)				기정	-	121	-	-	-	-	-	-
				변경	-	130	-	-	-	-	-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0	중로2-2	교사리 893-1번지	-	-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63	중로2-2	교사리 774-6번지	-	-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8	중로2-2	교사리 897-3번지	-	-	고성군 고시 제2020-305호 (2020.12.18.)	-
신설	소로	3	1	4	국지도로	9	중로2-2	교사리 896-24번지	-	-	-	-

(다)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합 계			-	7,722	-	-
기정	①	주차장	교사리 920-1번지 일원	7,722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2) 공간시설

(가) 공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4	감)42	21,049	-	-
변경	①	공원	근린 공원	교사리 산31-1번지 일원	19,491	감)42	19,449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기정	①	공원	소공원	교사리 889번지 일원	1,600	-	1,600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나)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15,341	-	-
기정	①	녹지	완충 녹지	교사리 888-14번지 일원	13,516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기정	②	녹지	완충 녹지	교사리 889번지 일원	875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기정	③	녹지	완충 녹지	교사리 782-1번지 일원	950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3) 방재시설

(가) 우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우수지	저류 시설	교사리 779번지 일원	1,853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4)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하수도	오수 처리 시설	교사리 779번지 일원	929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5) 용수공급 계획(변경없음)

구 분	용수량(㎡/일)	비 고	
합 계	113	대독배수지에서 공급	
생활용수	일최대급수량		92
	시간최대급수량		138
공업용수	21		

6) 오·폐수처리 계획(변경없음)

구 분	오수량(㎡/일)	비 고
합 계	78	오수처리시설 신설을 통한 자체처리
생활오수량	77	
공업폐수량	1	

7)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가) 전력

구 분	계획전력량(Mwh/년)	비 고
전력량	4,649.5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나) 열수요(변경없음)

구 분	연간 열부하 (Gcal/년)	비 고
전력량	5,205	경남에너지와 협의하여 공급

8)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회선수요량(회선)	비 고
회선수	55	(주)KT와 협의하여 공급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 255.5억 원

나. 재원조달계획 :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특별회계 전출금)100%를 확보 시행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1】**

11.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분류	업종	면적(㎡)	구성비(%)	비고
-	합 계	69,395	100.0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69,395	100.0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30,607	130,607	100.0	100.0	-
유상 공급	소 계	80,897	80,897	61.9	61.9	-
	산업시설용지	69,395	69,395	53.1	53.1	고성군
	지원시설용지	3,780	3,780	2.9	2.9	고성군
	주차장	7,722	7,722	5.9	5.9	고성군
무상 공급	소 계	49,710	49,710	38.1	38.1	-
	도로	10,496	10,538	8.0	8.0	고성군
	공원	21,091	21,049	16.3	16.1	고성군
	완충녹지	15,341	15,341	11.7	11.7	고성군
	오수처리시설	929	929	0.7	0.7	고성군
	저류시설	1,853	1,853	1.4	1.4	고성군

14.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각호의 사항(세부도면생략)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67,231,155.1	-	667,231,155.1	100.01		
소계		23,219,220.6	-	23,219,220.6	3.51		
도 시 지 역	주거 지역	소계	2,788,313.0	-	2,788,313.0	0.4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일반주거지역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63,778.0	-	1,763,778.0	0.26	
		제2종일반주거지역	878,322.0	-	878,322.0	0.13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준주거지역	146,213.0	-	146,213.0	0.02		
	상업 지역	소계	184,289.0	-	184,289.0	0.03	
		중심상업지역	-	-	-		
		일반상업지역	184,289.0	-	184,289.0	0.03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공업 지역	소계	6,297,183.3	-	6,297,183.3	0.95	
		전용공업지역	-	-	-		
		일반공업지역	6,265,829.3	-	6,265,829.3	0.94	해면 1,547,743㎡
		준공업지역	31,353.0	-	31,353.0	0.01	
	녹지지역	소계	13,111,588.3	-	13,111,588.3	1.97	
		보전녹지지역	455,000.0	-	455,000.0	0.07	
		생산녹지지역	4,611,079.0	-	4,611,079.0	0.69	
자연녹지지역		8,045,509.3	-	8,045,509.3	1.21	해면 1,135,705㎡	
미지정		968,460.0	-	968,460.0	0.15	해면	
관리지역	소계	144,696,176.9	-	144,696,176.9	21.69		
	보전관리지역	42,276,753.4	-	42,276,753.4	6.34		
	생산관리지역	27,457,677.5	-	27,457,677.5	4.12		
	계획관리지역	74,960,583.0	-	74,960,583.0	11.23	해면 936,470㎡	
	관리지역	1,164.0	-	1,164.0	-		
농림지역		304,033,113.2	-	304,033,113.2	45.57		
자연환경보전지역		49,732,364.0	-	49,732,364.0	7.45		
미지정		145,419,670.4	-	145,419,670.4	21.79	해면	

※ 기정: 고성군 고시 제2019-195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19.12.19)

2) 이당일반산업단지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총 계		130,607	100.0	-	
도시지역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30,607	100.0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이당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91-13번지일원	130,607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계	기정	5	762	10,496	-	-	-	4	744	10,409	1	18	87
	변경	6	771	10,538	-	-	-	4	744	10,409	2	27	129
중로	기정	2	641	9,615	-	-	-	2	641	9,615	-	-	-
	변경	2	641	9,585	-	-	-	2	641	9,585	-	-	-
소로	기정	3	121	911	-	-	-	2	103	824	1	18	87
	변경	3	130	1,013	-	-	-	2	103	824	2	27	129
가각 및 기타(㎡)			기정	34									
			변경	34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계	기정				-	762	-	-	-	-	-	-
	변경				-	771	-	-	-	-	-	-
중로 소계(2개소)						641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200	중로1-18	교사리 917번지	일반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지구 외 수도시설 중복결정 (77㎡)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441	중로2-1	중로2-1	일반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소로 소계(4개소)						기정	121	-	-	-	-	-
						변경	130	-	-	-	-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40	중로2-2	교사리 893-1번지	-	-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63	중로2-2	교사리 774-6번지	-	-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18	중로2-2	교사리 897-3번지	-	-	고성군 고시 제2020-305호 (2020.12.18.)	
신설	소로	3	2	4	국지 도로	9	중로2-2	교사리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2	- 신설 • L=9m, B=4m	• 공원 관리 및 인근 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한 군관리계획(도로: 소로 3-2호선) 신설하고자 함.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합 계			-	7,722	-	-
기정	①	주차장	교사리 920-1번지 일원	7,722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21,091	감) 42	21,049	-
변경	①	공원	근린 공원	교사리 산31-1번지 일원	19,491	감) 42	19,449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기정	①	공원	소공원	교사리 889번지 일원	1,600	-	1,600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공원 면적 감소 - 당초: 19,491㎡ 변경: 19,449㎡(감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2호선) 신설에 따라 근린공원 일부 변경(면적 감소)하고자 함.

(라)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15,341	-	-
기정	①	녹지	완충 녹지	교사리 888-14번지 일원	13,516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기정	②	녹지	완충 녹지	교사리 889번지 일원	875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기정	③	녹지	완충 녹지	교사리 782-1번지 일원	950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마) 방재시설(유수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교사리 779번지 일원	1,853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바)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하수도	오수 처리시설	교사리 779번지 일원	929	고성군 고시 제2019-133호 (2019.09.19.)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80,897	-	80,897	-
산업	A	69,395	교사리 891-13번지일원	69,395	산업시설
지원	B	3,780	교사리 915번지일원	3,780	지원시설
주차	B	7,722	교사리 920-1번지일원	7,722	공공시설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 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산업	A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5층이하	

(나)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B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유흥시설(단, 주택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운동시설(단,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5층이하	

(다)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	B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5층이하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근린공원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물			공작물		비고
	기정	변경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계	19,491.0	19,449.0	-	-	-	27개소	11개소	시설율 5.4%
기 반 시 설	소계	683.4	818.7	-	-	2개소	-	
	도로	588.2	635.0	-	-	-	-	
	광장	65.2	183.7	-	-	-	-	
	기타	196.9	215.7	-	-	-	19개소	8개소
휴양시설	166.0	18.0	-	-	-	6개소	3개소	
운동시설	18,444.7	18,427.6	-	-	-	-	-	
녹지및기타	18,667.8	18,444.7	-	-	-	-	-	94.6%

공원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계	공원면적	-	-	19,491.0	19,449.0	-	-	-	-	-	-	
소계	시설합계	-	-	1,046.3	1,052.4	-	-	-	-	27개소	11개소	
기반 시설	소계	-	-	683.4	818.7	-	-	-	-	2개소	-	
	도로	-	부지내	588.2	635.0	-	-	-	-	-	-	
	광장	가-1	부지내	44.5	149.5	-	-	-	-	-	-	
	광장	가-2	부지내	34.2	34.2	-	-	-	-	-	-	
	계단A	①	부지내	9.0	-	-	-	-	-	1개소	-	
	계단B	②	부지내	7.5	-	-	-	-	-	1개소	-	
휴양 시설	소계	-	-	196.9	215.7	-	-	-	-	19개소	8개소	
	휴게공간	나-1	부지내	196.2	215.7	-	-	-	-	1개소	1개소	
	휴게공간	나-2	부지내	-	-	-	-	-	-	-	-	
	앉음벽	①	부지내	0.7	-	-	-	-	-	1개소	-	
	파고라A	②	부지내	-	-	-	-	-	-	-	-	
	파고라B	③	부지내	-	-	-	-	-	-	-	-	
	등의자	④	부지내	-	-	-	-	-	-	17개소	7개소	
운동 시설	소계	-	-	166.0	18.0	-	-	-	-	6개소	3개소	
	운동공간	다-1	부지내	16.5	18.0	-	-	-	-	-	-	
	운동공간	다-2	부지내	149.5	-	-	-	-	-	-	-	
	체력단련시설A	⑤	부지내	-	-	-	-	-	-	2개소	1개소	
	체력단련시설B	⑥	부지내	-	-	-	-	-	-	2개소	1개소	
	체력단련시설C	⑦	부지내	-	-	-	-	-	-	2개소	1개소	
기타 시설	소계	-	-	18,444.7	18,427.6	-	-	-	-	-	-	
	녹지	-	부지내	18,444.7	18,427.6	-	-	-	-	-	-	

2) 소공원(변경없음)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물			공작물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600.0	-	-	-	10개소	시설율 18.47%
기 반 시 설	소계	185.5	-	-	-	-
	도로	157.0	-	-	-	-
	광장	18.0	-	-	-	-
	계단	10.5	-	-	-	1개소
휴양시설	75.5	-	-	-	6개소	-
운동시설	34.5	-	-	-	3개소	-
녹지및기타	1,304.5	-	-	-	-	81.53%

□ 공원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공원면적	-	-	1,600.0	-	-	-	-	-	
소계	시설합계	-	-	295.5	-	-	-	-	10개소	
기 반 시 설	소계	-	-	185.5	-	-	-	-	1개소	
	도로	-	부지내	157.0	-	-	-	-	-	
	광장	가	부지내	18.0	-	-	-	-	-	
	계단	①	부지외	10.5	-	-	-	-	1개소	
휴 양 시 설	소계	-	-	75.5	-	-	-	-	6개소	
	휴게공간	나-1	부지내	11.7	-	-	-	-	-	
	휴게공간	나-2	부지내	63.8	-	-	-	-	-	
	등의자	②	부지내	-	-	-	-	-	6개소	
운 동 시 설	소계	-	-	34.5	-	-	-	-	3개소	
	운동공간	다	부지내	34.5	-	-	-	-	-	
	체력단련시설A	③	부지내	-	-	-	-	-	1개소	
	체력단련시설B	④	부지내	-	-	-	-	-	1개소	
	체력단련시설C	⑤	부지내	-	-	-	-	-	1개소	
기 타 시 설	소계	-	-	1,304.5	-	-	-	-	-	
	녹지	-	부지내	1,304.5	-	-	-	-	-	

15. 관련도서 열람방법 : 고성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함.(지형도면 게재 생략)

○ 열람장소 : 고성군청(일자리경제과, 도시교통과)(☎ 055-670-2314, fax.055-670-2709)

고성군계획시설(이당일반산업단지 : 주차장, 도로, 공원, 녹지, 우수지, 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 수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91-13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방재시설, 하수도)사업
- 2) 명 칭 : 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설명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도 로	중로 2-1호선		L=200m, B=15m		
	중로 2-2호선		L=441m, B=15m		
	중로2-14호선		L=536m, B=15m		
	소로2-1호선		L=40m, B=8m		
	소로2-2호선		L=63m, B=8m		
	소로3-1호선		L=18m, B=4m		
	-	소로3-2호선	-	L=9m, B=4m	신설
주 차 장	노외주차장 1		A=7,722㎡		
공 원	근린공원 1	근린공원 1	A=19,491㎡	A=19,449㎡	변경
	소공원 1		A=1,600㎡		
녹 지	완충녹지 1		A=13,516㎡		
	완충녹지 2		A=875㎡		
	완충녹지 3		A=950㎡		
방재시설	우수지 1		A=1,853㎡		
하 수 도	하수도 1		A=92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고성군수
- 2)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착 수 일 : 산업단지계획승인일(2019년 9월 19일)
- 2) 준공예정일 : 당초 : 2022. 09. 31, 변경 : 2022.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 불입

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번호	행정 구역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자			비 고
					이름	지분률	등기부상 주소	이름	주소	권리관계	
총계	당초 변경	154필지 152필지	171,164 133,129	130,607.0	-		-				오기정정
1	이당리	272-1답	1,290.0	1,290.0	이충구		서외리 101-14				
2	이당리	273답	1,924.0	1,913.0	이혜영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92-47 월저빌라 101호				
3	이당리	274답	586.0	586.0	이일량		송학리 264-18				
4	이당리	275답	368.0	368.0	이일량		송학리 264-18				
5	이당리	276전	102.0	102.0	이일량		송학리 264-18				
6	이당리	277-1전	395.0	395.0	강분선		145				
7	이당리	277-2대	647.0	647.0	최호돈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6, 503동 302호(덕진5차휴먼빌)	고성축산업협동조합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3번길 65 (고성읍지점)	근저당권	
8	이당리	277-3전	332.0	332.0	최호돈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6, 503동 302호(덕진5차휴먼빌)	고성축산업협동조합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3번길 65 (고성읍지점)	근저당권	
9	이당리	277-4전	607.0	607.0	이일량		송학리 264-18				
10	이당리	278답	1,457.0	1,457.0	이환수	1/2	기월리 138-15				
					이봉수	1/2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7 주공아파트 103-106				
11	이당리	278-1답	67.0	67.0	최호돈						
12	이당리	279답	280.0	280.0	이환수	762/1524	기월리 138-15				
					이봉수	1/2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7 주공아파트 103-106				
13	이당리	280-1전	160.0	160.0	이혜영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182-3 한일하나로아파트 201호				
14	이당리	280-3전	53.0	53.0	이혜영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182-3 한일하나로아파트 201호				
15	이당리	280-9답	872.0	872.0	이혜영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182-3 한일하나로아파트 201호				
16	이당리	1081-29답	1,151.0	1,151.0	경상남도		-				
17	이당리	1081-31답	122.0	122.0	경상남도		-				
18	이당리	1092도	354.0	237.0	국(농림축산식품부)		-				
19	교사리	774-19도	79	79	김형욱		796				
20	교사리	774-20장	69	69	옥창협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137번길 33(감전동)				
21	교사리	775-1도	23.0	23.0	이봉출		794				
22	교사리	776-2도	7.0	7.0	김이현		770				
23	교사리	777-2도	79.0	79.0	고성군						
24	교사리	777-3도	60.0	60.0	고성군						
25	교사리	778전	1,871.0	1,871.0	고성군						
26	교사리	779전	3,821.0	3,821.0	고성군						
27	교사리	780-2도	69.0	69.0	김상기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766				
28	교사리	780-3도	89.0	89.0	고성군						
29	교사리	781-3도	66.0	66.0	김연근		789				
30	교사리	781-4도	20.0	20.0	김연근		789				
31	교사리	781-5도	56.0	56.0	김연근		789				
32	교사리	781-6도	7.0	7.0	김연근		789				
33	교사리	782-1전	1,055.0	1,055.0	심재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무량3길 11				
34	교사리	782-2도	13.0	13.0	고성군						
35	교사리	882-1답	877.0	877.0	곽상중		김해시 외동 1249-7 성원입대아파트 304-409				
36	교사리	882-2답	917	917	선봉주		창원시 남산동 601-26 남산아파트 5-404호				

번호	행정 구역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자			비 고
					이름	지분률	등기부상 주소	이름	주소	권리관계	
37	교사리	882-11답	695	695	고성군						
38	교사리	882-3답	2,133.0	2,133.0	고성군						
39	교사리	882-4답	1,289.0	1,289.0	고성군						
40	교사리	882-5답	1,129.0	1,129.0	고성군						
41	교사리	888-1답	994.0	994.0	고성군						
42	교사리	888-2답	901.0	901.0	고성군						
43	교사리	888-3답	974.0	974.0	고성군						
44	교사리	888-4답	420.0	420.0	고성군						
45	교사리	888-5답	662.0	662.0	국(건설부)						
46	교사리	888-6답	320.0	320.0	고성군						
47	교사리	888-7답	776.0	776.0	고성군						
48	교사리	888-8답	1,050.0	1,050.0	고성군						
49	교사리	888-9답	1,143.0	1,143.0	고성군						
50	교사리	888-10답	507.0	507.0	고성군						
51	교사리	888-11답	648.0	648.0	고성군						
52	교사리	888-12답	1,209.0	1,209.0	고성군						
53	교사리	888-13답	458.0	458.0	고성군						
54	교사리	888-14답	526.0	526.0	고성군						
55	교사리	889답	1,965.0	1,965.0	고성군						
56	교사리	890-1답	1,695.0	1,695.0	고성군						
57	교사리	890-2답	1,338.0	1,338.0	고성군						
58	교사리	890-3답	2,992.0	2,992.0	고성군						
59	교사리	890-4답	2,568.0	2,568.0	고성군						
60	교사리	891-1답	612.0	612.0	고성군						
61	교사리	891-2답	2,517.0	2,517.0	고성군						
62	교사리	891-3과	1,830.0	1,830.0	고성군						
63	교사리	891-4과	2,094.0	2,094.0	고성군						
64	교사리	891-5과	2,019.0	2,019.0	고성군						
65	교사리	891-6답	2,044.0	2,044.0	고성군						
66	교사리	891-7답	2,010.0	2,010.0	고성군						
67	당초 변경	-	-	-	-						누락오기 정정
	교사리	891-8답	3,000.0	3,000.0	고성군						
68	교사리	891-9답	3,000.0	3,000.0	고성군						
69	교사리	891-10답	2,985.0	2,985.0	고성군						
70	교사리	891-11답	1,847.0	1,847.0	고성군						
71	교사리	891-12답	1,123.0	1,123.0	고성군						
72	교사리	891-13답	2,982.0	2,982.0	고성군						
73	교사리	891-14답	2,940.0	2,940.0	고성군						
74	교사리	891-15답	2,349.0	2,349.0	고성군						
75	교사리	893-4도	24	24	고성군						
76	교사리	893-5도	47.0	47.0	고성군						
77	교사리	896-2답	1,074.0	1,074.0	이태우		거제시 옥포동 874-4 석천아트타운 203-106				
78	교사리	896-7도	13.0	13.0	박종린		879				
79	교사리	896-8도	102.0	102.0	박종린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96-4				
80	교사리	896-10도	10.0	10.0	고성군						
81	교사리	896-11도	13.0	13.0	고성군						
82	교사리	896-25답	3,003	3,003	고성군						
83	교사리	897-6답	666.0	666.0	고성군						
84	교사리	897-2답	1,352.0	1,352.0	고성군						
85	교사리	897-7전	1,107.0	1,107.0	고성군						
86	교사리	897-4도	43.0	43.0	김일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1가 231				
87	교사리	897-5도	165.0	165.0	김일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1가 231				
88	교사리	898-2도	60.0	60.0	김수일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767				
89	교사리	898-3도	36.0	36.0	고성군						
90	교사리	899-2도	7.0	7.0	김형주		767				
91	당초 변경	교사리	900답	750.0	750.0	고성군					지번오기 정정
	교사리	900-2답	750.0	750.0	고성군						

번호	행정 구역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자			비고
					이름	지분률	등기부상 주소	이름	주소	권리관계	
92	당초 변경	교사리 901답	546.0	546.0	고성군						지번 오기 정정
		교사리 901-4답	546.0	546.0	고성군						
93	교사리	901-5답	492.0	492.0	고성군						
94	교사리	902-1도	69.0	69.0	고성군						
95	당초 변경	교사리 902-1도	69.0	69.0	고성군						오기 정정
		교사리 902-3도	7.0	7.0	고성군						
96	교사리	902-5도	23.0	23.0	고성군						
97	교사리	902-6도	66.0	66.0	고성군						
98	교사리	903-1답	825.0	825.0	고성군						
99	교사리	905-2답	516.0	516.0	고성군						
100	교사리	906-2답	392.0	392.0	고성군						
101	교사리	907-2답	361.0	361.0	고성군						
102	교사리	908-5답	564.0	564.0	고성군						
103	교사리	909-7답	512.0	512.0	고성군						
104	교사리	910-2답	451.0	451.0	고성군						
105	교사리	911-2답	170.0	170.0	고성군						
106	교사리	912-2답	246.0	246.0	고성군						
107	교사리	913-2답	330.0	330.0	고성군						
108	교사리	914-4답	175.0	175.0	고성군						
109	교사리	914-5답	113.0	113.0	고성군						
110	교사리	915-2답	236.0	236.0	고성군						
111	교사리	916-6답	181.0	181.0	고성군						
112	교사리	917-2답	106.0	106.0	고성군						
113	교사리	918-2답	25.0	25.0	고성군						
114	교사리	919-7답	65.0	65.0	고성군						
115	교사리	919-8답	27.0	27.0	고성군						
116	교사리	920-1답	1,751.0	1,751.0	고성군						
117	교사리	920-3답	1,477.0	1,477.0	고성군						
118	교사리	921-1답	794.0	794.0	김출현						
119	교사리	921-8답	582.0	582.0	고성군						
120	교사리	921-9답	338.0	338.0	고성군						
121	교사리	921-10답	696.0	696.0	고성군						
122	교사리	921-11답	303.0	303.0	고성군						
123	교사리	921-12답	303.0	303.0	고성군						
124	교사리	928-1구	81.0	81.0	국(농림수산부)						
125	교사리	929-2구	6,097.0	6,097.0	국(농림수산부)						
126	교사리	929-3구	161.0	161.0	국(농림수산부)						
127	교사리	930-1도	447.0	447.0	국(농림수산부)						
128	교사리	931-1구	462.0	462.0	국(농림수산부)						
129	교사리	934도	636.0	636.0	국(농림수산부)						
130	교사리	935도	331.0	331.0	국(농림수산부)						
131	교사리	936-1도	43.0	43.0	국(농림수산부)						
132	교사리	937-1도	1,932.0	1,932.0	국(농림수산부)						
133	교사리	947-2답	129.0	129.0	선봉주		창원시 남산동 601-26				
134	교사리	948-1대	298.0	298.0	강희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8-1 한선파라빌리지 203-503				
135	교사리	948-2답	245.0	245.0	진성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8-1 한선파라빌리지 203-503				
136	교사리	948-3답	37.0	37.0	김길만		789-1				

번호	행정 구역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자			비고
					이름	지분률	등기부상 주소	이름	주소	권리관계	
137	교사리	948-4잡	654.0	654.0	이철성		948-4				
138	교사리	948-5답	337.0	337.0	조영숙		부산 동구 수정동 227-21				
139	교사리	948-6대	459.0	459.0	진성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8-1 한선파라빌리지 203-503				
140	교사리	949답	387.0	387.0	진성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8-1 한선파라빌리지 203-503				
141	교사리	950답	84.0	84.0	진성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8-1 한선파라빌리지 203-503				
142	교사리	964-10도	586.0	586.0	국 (건설부)						
143	교사리	966-66전	100.0	100.0	경상남도						
144	교사리	966-38전	72.0	72.0	경상남도						
145	당초 변경	교사리 966-67전	100.0	100.0	경상남도						오기 정정
		교사리 966-67전	123.0	123.0	경상남도						
146	교사리	산30입	977	821.0	경상남도						
147	교사리	산30-2입	1123.0	168.0	경상남도						
148	교사리	산31-1입	9,862.0	9,862.0	고성군						
149	교사리	산31-2입	496.0	496.0	고성군						
150	교사리	산31-5입	1,557.0	1,557.0	고성군						
151	교사리	산33-13입	3,602.0	3,602.0	고성군						
152	교사리	산33-7입	1,086.0	38.0	고성군						

2) 이당일반산업단지 외 사업에 대한 준용 (중로 2-14호선)

번호	행정 구역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자			비고
					이름	지분률	등기부상 주소	이름	주소	권리관계	
1	교사리	841 전	881	2	임금옥		경남 고성군 고성읍 사동길 200-4				
2	교사리	963 천	3,372	75	국토교통부						
3	교사리	967 도	393	318	국토교통부						
4	교사리	968 도	493	361	국토교통부						
5	교사리	835-1 도	67	22	국토교통부						
6	교사리	835-2 도	152	69	국토교통부						
7	교사리	835-3 도	199	12	국토교통부						
8	교사리	838-10 도	59	34	국토교통부						
9	교사리	838-3 도	10	10	황봉영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795				
10	교사리	840-33 전	234	214	고성군						
11	교사리	840-34 입	20	11	고성군						
12	교사리	840-35 도	41	31	고성군						
13	교사리	840-36 잡	44	38	고성군						
14	교사리	840-4 도	463	463	국토교통부						
15	교사리	840-5 도	155	155	국토교통부						
16	교사리	841-4 도	22	22	국토교통부						
17	교사리	841-7 전	52	47	고성군						
18	교사리	845-1 대	502	166	배우영		경남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 156,103-1902	창원원에 농업협동 조합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317	근저당	
19	교사리	845-2 도	202	202	고성군						
20	교사리	845-3 도	285	287	국토교통부						
21	교사리	845-4 수	20	20	국토교통부						

번호	행정 구역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자			비고	
					이름	지분률	등기부상 주소	이름	주소	권리관계		
22	교사리	845-5 도	130	26	고성군							
23	교사리	845-7 전	157	156	고성군							
24	교사리	875-10 입	46	38	고성군							
25	교사리	875-4 대	1,344	108	이순옥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37-3	고성농업협동조합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87-2	근저당		
26	교사리	875-5 도	377	377	서정외4인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동 195-1					
27	교사리	875-6 도	69	60	국토교통부							
28	교사리	875-9 대	57	41	고성군							
29	교사리	895-11 전	52	52	이봉원							
30	교사리	895-13 도	191	156	국토교통부							
31	교사리	895-14 도	407	407	고성군							
32	교사리	895-16 도	188	188	고성군							
33	교사리	895-18 도	512	512	이봉원							
34	교사리	895-19 도	20	20	국토교통부							
35	교사리	895-2 전	37	37	서석구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779					
36	교사리	895-23 도	46	39	국토교통부							
37	교사리	895-24 도	41	42	국토교통부							
38	교사리	895-3 도	7	7	고성군							
39	교사리	895-33 수	281	46	국토교통부							
40	교사리	895-4 도	122	122	선우웅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791					
41	교사리	895-5 도	7	2	선우웅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791					
42	교사리	968-1 도	933	75	국토교통부							
43	교사리	968-2 도	204	318	국토교통부							
44	교사리	산32-17 도	447	361	김일렬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784					
45	교사리	산32-19 도	271	22	고성군							
46	교사리	산32-21 도	91	69	국토교통부							
47	교사리	산32-23 수	516	12	국토교통부							
48	교사리	산32-25 입	25	34	고성군							
49	교사리	산34-1 입	1205	10	임정이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28					
50	교사리	산34-4 도	13	214	사유지							
51	교사리	산34-5 도	605	11	이봉원							
52	교사리	산34-7 도	73	31	국토교통부							
53	교사리	산34-8 도	31	38	국토교통부							
54	교사리	산37-2 도	93	463	천대녕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산37-1					
55	교사리	산37-3 도	22	155	천대녕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산37-1					
56	교사리	895-1 대	151	22	임정이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28					
57	교사리	874-4 대	422	47	배창열		고성군 고성읍 사동길 225					
58	교사리	877-1 대	219	166	김명숙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5길 32 에텐상가 105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배문로2가 9-1	근저당		
59	교사리	878-1 답	530	202	주민순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90번길 15-4					
60	교사리	966-14 천	2295	287	국토교통부							
61	교사리	971-1 도	475	20	국토교통부							
62	교사리	산46-1 입	110,038	26	김창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63	교사리	산54-1 입	958	156	전영우		충무시 도천동 278-2 만복도천비치맨션 1-503호					
64	교사리	산56-1 입	1280	38	박정배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90-1 유성아파트 나-303					

고성군 고시 제2021-248호

제일농공단지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성군 고시 제2011-34호(2011.04.12.)로 최초 수립, 고성군고시 제2012-175호(2012.10.11.), 고성군고시 제2013-205호(2013.12.09.), 고성군고시 제2014-211호(2014.12.09.), 고성군고시 제2015-126호(2015.10.29.), 고성군 고시 제2015-151호(2015.12.11.)로 수립(변경)한 제일농공단지계획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 실시계획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립(변경) 및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8. 19.

고 성 군 수

□ 제일농공단지계획 (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제일농공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현재 가동 중인 기존의 노후화된 도축시설을 현대화하여 위생수준을 강화하여 도축, 가공 및 이송의 전 과정에서 HACCP, 축산물이력추적제 등의 적용이 가능한 생산설비를 갖춘 축산물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 도축장 주변을 식육의 전시, 구매와 섭취가 가능한 식육유통 전문매장으로 꾸며 유통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저감 및 도축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LPC)으로 발전시켜,
- 지역 축산업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통한 복합적인 농어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변 도시들과 연계한 로컬푸드시스템(Local Food System) 구축으로 지역사회 먹거리보장(Food Security) 등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나. 농공단지계획(변경) 사유

- 가동 중인 기존 수질오염방지시설(400㎡/일)의 노후화로 인한 처리효율 저하

에 대비하여 시설의 추가 증설(194㎡/일)이 필요하며, 또한 기계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의 증축을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일부 확장

○ 또한 기계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의 증축을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일부 확장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219번지 일원

나. 면 적 : 43,429.7㎡ → 44,523.8㎡ (증 1,094.1㎡)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11. 04. 12 ~ 2015. 12. 31

변경 2011. 04. 12. ~ 2021. 12. 31 (변경 : 개발기간 연장)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실수요자 직접개발 : 단일기업 입주)

5.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 식료품 제조업 (C10)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가.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9

나. 성 명 : 제일리버스(주) 대표 오 만 호 (기 정)

제일리버스(주) 대표 황 창 운 (변 경)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

가. 지목별 현황

구분	필 지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전	-	-	-	-	-	
답	-	1	-	619.2	1.4	
잡	1	1	932.6	932.6	2.1	
임	-	-	-	-	-	
창	-	-	-	-	-	
구	-	2	-	474.9	1.1	
장	1	1	26,609.9	26,609.9	59.7	
대	1	1	4,969.9	4,969.9	11.2	
도	1	1	1,359.6	1,359.6	3.0	
공	1	1	7,844.7	7,844.7	17.6	
차	1	1	1,713.0	1,713.0	3.9	
합계	6	9	43,429.7	44,523.8	100.0	

※ 변경사유 : 부지 증설로 인한 면적 확장

나.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필 지 수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국 유 지	-	2	-	474.9	1.1	
공 유 지	1	1	7,844.7	7,844.7	17.6	
사 유 지	5	6	35,585.0	36,204.2	81.3	
합 계	6	9	43,429.7	44,523.8	100.0	

※ 변경사유 : 부지 증설로 인한 면적 확장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 시설별·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설 별	용 도 별	면 적 (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합	계	43,429.7	증)1,094.1	44,523.8	100.0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BL1-1)	26,609.9	증)1,094.1	27,704.0	62.2	
지원시설용지	생산지원시설(BL2)	4,969.9	-	4,969.9	11.2	
	생산지원시설(BL1-2)	932.6	-	932.6	2.1	
	소 계	5,902.5	-	5,902.5	13.3	
공공시설용지	도로용지	1,359.6	-	1,359.6	3.0	
	주차장용지	1,713.0	-	1,713.0	3.9	
	녹지용지	7,844.7	-	7,844.7	17.6	
	소 계	10,917.3	-	10,917.3	24.5	

※ 변경사유 : 부지 증설로 인한 면적 확장

○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3,429.7	증)1,094.1	44,523.8	100.0	
계획관리지역	43,429.7	증)1,094.1	44,523.8	100.0	- 제일농공단지

※ 변경사유 : 부지 증설로 인한 면적 확장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계획 (변경없음)

가) 총괄표

등급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1	86	1,359.6	-	-	-	1	86	1,359.6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86	1,359.6	-	-	-	1	86	1,359.6	-	-	-
소로	-	-	-	-	-	-	-	-	-	-	-	-

나) 세부 도로계획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86	중로 1-43호선	울대리 219	일반도로	-	2014.12.9. (고성군고시 제2014-211호)	-

2)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고성읍 울대리 223번지	1,713.0	-	1,713.0	2011.4.12. (고성군고시 제2011-34호)	-

3) 녹지시설계획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 지	완충 녹지	고성읍 울대리 220번지	7,844.7	-	7,844.7	2011.4.12. (고성군고시 제2011-34호)	선형변경

※ 변경사유 : 부지 증설로 인한 면적 확장

4) 용수공급시설 계획 (변경)

○ 계획용수량

구 분	용수수요량(㎡/일)		계획급수량(㎡/일)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일)	340.2	505.2	400.0	594.0
공 업 용 수(㎡/일)	238.5	343.5		
생 활 용 수(㎡/일)	101.7	101.7		

○ 용수공급계획

- 공업용수 : 기존상수도 사용 및 세척수로 기존 지하수 이용
- 생활용수 : 기존 상수도 사용
- 재이용수 :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정화처리한 오·폐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 지상 수조 용량 : Q = 100㎡ 이상 확보
- 옥상 수조 용량 : Q = 130㎡ 이상 확보

※ 용수공급시설 계획 변경없이 기존의 시설 및 자체 시설을 확보 활용.

5) 우수처리시설 계획 (변경없음)

○ 우수유출량

구 분	유출계수	강우강도 (mm/hr)	유역면적 (ha)	우수유출량 (m ³ /sec)	우수유출량 (m ³ /hr)	비 고
배수유역	0.8	5.0	3.4451	0.0383	137.88	녹지용지 제외

○ 우수처리시설 계획

- 우수차집관거 : 분류식으로 D = 400mm로 계획, 부지 내 U형측구 계획
- 초기우수처리시설 : 2기의 장치형 비점오염물질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공공수역으로 방류

6) 오·폐수처리시설 계획 (변경)

○ 계획 오·폐수량 (단위: m³/일)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발생량 (m ³ /일)	322.33	156.33	478.66	경미 변경
처리량 (m ³ /일)	400.00	194.00	594.00	경미 변경

- 처리방법 : 발생 오·폐수를 전량 차집 관거 (D:200~300mm)를 통해 단지 내 수질 오염 방지 시설로 인입, 처리 후 재활용수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공수역으로 방류

7)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변경없음)

○ 폐기물발생량

합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비 고	
	계	종량제	음식물	계	배출시설계			지정 폐기물
					가연성	불연성		
75.216	0.2434	0.0766	0.1668	74.9724	18.9198	55.9953	0.0573	

주 : 폐기물중 재활용 부분은 제외

○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 분리수거 및 고성군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따라 위탁처리

8) 전력공급시설 계획 (변경없음)

○ 전력수요량

구 분	전력사용량 (MWh/m ² ·년)	비 고
식료품제조업(산업시설용지)	12,410	
지원시설용지	943	
계	13,353	

- 전력공급시설 계획 (변경없음)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9) 통신시설 계획 (변경없음)

- 회선수요량

구 분	공급회선(회선)	비 고
통신회선	20	

- 통신공급시설 계획
 - 기존 공급자 및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공급

9.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총사업비 (변경)

1) 보상비 (변경)

구 분	보 상 비 (백만원)		비 고
	기정	변경	
사 유 지	4,224	4,324	취득 완료
국공유지	0	0	공공시설 무상귀속.양여 협의대상
합 계	4,224	4,324	

2) 총공사비 (변경)

구 분	사 업 규 모 (㎡)		공 사 비 (백만원)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산 업 시 설	A=26,609.9㎡	A=27,704.0㎡	927	922	- 생태연못 포함
지원시설(전시판매, 수질오염방지시설)	A=4,969.9㎡ Q=400㎡/일	A=4,969.9㎡ Q=594㎡/일	1,354	1,354	- Q : 수질오염방지 시설 용량
도 로	변경없음	변경없음	130	130	
녹 지	A=7,844.7㎡	A=7,844.7㎡	362	362	- 선형변경
주 차 장	A=1,713㎡	A=1,713㎡	169	169	
진 입 도 로	B=20m,L=166m	B=20m,L=166m	335	335	
합 계			3,277	3,272	

※ 변경사유 : 사업비 변경 사항 반영

3) 총사업비 (변경)

구 분	비 목	사 업 규 모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용지비	토지보상비	농공단지 및 진입도로	4,224	증)100	4,324	
조성비	공사비	단지 A=44,523.8㎡ 진입로 B=20m, L=166m	3,277	감)5	3,272	
	조사설계·감리비 등	-	575	증)40	615	
기 타	예비비	용지부담금,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792	증)8	800	
합 계			8,868	증)143	9,011	

※ 변경사유 : 사업비 변경 사항 반영

나. 재원조달계획 (변경)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투 자	신규투자	2021년	비 고
용 지 비	4,324	4,224	100	100	
조 성 비	3,956	3,852	35	35	
예 비 비	800	792	8	8	
합 계	9,011	8,868	143	143	
구 성 비 (%)	100.0	98.4	1.6	1.6	

※ 변경사유 : 사업비 변경 사항 반영

2) 재원조달계획

구 분	비 목	재 원 조 달 계 획 (백만원)			비 고
		투 자 계 획		조 달 계 획	
		기투자	2021년		
합 계		8,868	143	- 경상이익투자 : 100.0%	
용 지 비	토지보상비 등	4,224	100	-	
조 성 비	공 사 비	3,277	-5	-	
	조사·설계비 등	575	40	-	
	소 계	3,852	35	-	
예 비 비	용지부담금 등	792	8	-	

※ 변경사유 : 사업비 변경 사항 반영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 [변경 : 붙임1]

※ 변경사유 : 토지매입에 따른 소유자 변경 반영

11. 에너지사용계획 (변경없음)

가. 에너지 수요량

구 분	연료 부문(TOE/년)	전력 부문(MWh/년)
산업시설용지	3,132	12,410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용지	18	943
계	3,150	13,353

나. 공급시설 계획

- 전 력 : 기존 수전시설을 고려 한국전력과 협의
- 도시가스 : 도시가스공급망 구축현황 고려 경남에너지(주)와 협의

12.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구 분	농공단지 (㎡)	산업시설용지 (㎡)	유치업종 배치계획				비 고
			업 종 명	코드	비치면적 (㎡)	구성비 (%)	
당 초	43,429.7	26,609.9	식료품 제조업	C10	26,609.9	100.0	
변 경	44,523.8	27,704.0			27,704.0	100.0	

13.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

분 양 대 상 용 지					유치업종	입 주 수 요	비 고
시설구분	용도구분	면 적 (㎡)					
		당 초	증 감	변 경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	26,609.9	증)1,094.1	27,704.0	식료품 제조업(10)	제일리버스 주식회사	- 단일기업 입주

14.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가. 토 지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당 초	증 감	변 경	당 초	증 감	변 경	
산업시설 용 지	산업시설 (도축가공장)	26,609.9	증)1,094.1	27,704.0	61.3	증)0.9	62.2	사업 시행자 귀속
지원시설 용 지	전시·판매 시 설	4,969.9	-	4,969.9	11.4	감)0.2	11.2	사업 시행자 귀속
	수질오염 방지시설	932.6	-	932.6	2.2	감)0.1	2.1	사업 시행자 귀속
공공시설 용 지	도로	1,359.6	-	1,359.6	3.1	감)0.1	3.0	사업 시행자 귀속
	주차장	1,713.0	-	1,713.0	3.9	-	3.9	사업 시행자 귀속
	녹지	7,844.7	-	7,844.7	18.1	감)0.5	17.6	고성군 귀속
합 계		43,429.7	증)1,094.1	44,523.8	100.0	-	100.0	

나. 시설물 (변경)

구 분	단위	규 모		관리처분계획	비고	
		당 초	변 경			
도 로	중로2류	m	L=86, B=15	L=86, B=15	사업시행자 귀속	
주차장	노외주차장	㎡	1,713.0	1,713.0	사업시행자 귀속	
녹 지	완충녹지	㎡	7,844.7	7,844.7	고성군 귀속	선형변경

16.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 5항 각 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 총괄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67,230,893.2	-	667,230,893.2	100	
도시지역	23,167,656.2	-	23,167,656.2	3.48	
주거지역	2,692,008.0	-	2,692,008.0	0.40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26,525.0	-	1,726,525.0	0.26	
제2종일반주거지역	835,048.0	-	835,048.0	0.12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130,435.0	-	130,435.0	0.02	
상업지역	186,153.0	-	186,153.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6,153.0	-	186,153.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5,898,797.5	-	5,898,797.5	0.89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5,867,444.5	-	5,867,444.5	0.88	해면 1,444,148㎡
준공업지역	31,353.0	-	31,353.0	0.01	
녹지지역	13,422,237.7	-	13,422,237.7	2.01	
보전녹지지역	455,000.0	-	455,000.0	0.07	
생산녹지지역	4,639,715.0	-	4,639,715.0	0.69	
자연녹지지역	8,327,522.7	-	8,327,522.7	1.25	해면 1,135,705㎡
미지정	968,460.0	-	968,460.0	0.15	해면
관리지역	146,028,429.8	증1,094.1	146,029,523.9	21.9	
보전관리지역	42,347,225.4	-	42,347,225.4	6.35	
생산관리지역	27,165,504.5	-	27,165,504.5	4.07	
계획관리지역	76,515,699.9	증1,094.1	76,516,794.0	11.47	해면 936,999㎡
농림지역	303,899,512.2	감1,094.1	303,898,418.1	45.54	
자연환경보전지역	48,583,287.0	-	48,583,287.0	7.28	
미지정	145,552,008.0	-	145,552,008.0	21.80	해면

※ 기정 :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호마을 이주단지) 지형도면 고시(고성군고시 제 2015-129호, 2015. 10. 29.)

○ 제일농공단지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3,429.7	증)1,094.1	44,523.8	100.0	
계획관리지역	43,429.7	증)1,094.1	44,523.8	100.0	- 제일농공단지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219번지 일원	계 획 관리지역	계 획 관리지역	43,429.7	44,523.8	계획관리지역 150%이하 (농공단지)	◦기가동 중인 기존 수질 오염방지시설(400㎡/일) 의 노후화로 인한 처리효율 저하에 대비하여 시설의 추가 증설(194㎡/일)이 필요하며, 또한 기계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 의 증축을 위한 산업시설용지 의 일부 확장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제일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219번지 일원	43,429.7	증)1,094.1	44,523.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제일농공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 적 : 43,429.7㎡ → 44,523.8㎡ 증)1,094.1㎡	•가동 중인 기존 수질오염방지시설 (400㎡/일)의 노후화로 인한 처리 효율 저하에 대비하여 시설의 추 가 증설(194㎡/일) 필요하며, 또한 기계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의 증 축을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일부 확장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시 설 별	용 도 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합	계	43,429.7	증)1,094.1	44,523.8	100.0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BL1-1)	26,609.9	증)1,094.1	27,704.0	62.2	
지원시설용지	생산지원시설(BL2)	4,969.9	-	4,969.9	11.2	
	생산지원시설(BL1-2)	932.6	-	932.6	2.1	
	소 계	5,902.5	-	5,902.5	13.3	
공공시설용지	도로용지	1,359.6	-	1,359.6	3.0	
	주차장용지	1,713.0	-	1,713.0	3.9	
	녹지용지	7,844.7	-	7,844.7	17.6	
	소 계	10,917.3	-	10,917.3	24.5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 도로총괄조서

등급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86	1,359.6	-	-	-	1	86	1,359.6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86	1,359.6	-	-	-	1	86	1,359.6	-	-	-
소로	-	-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없음)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86	중로 1-43호선	울대리 219	일반 도로	-	2014.12.9. (고성군고시 제2014-211호)	진입 도로

나) 주차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없음)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고성읍 울대리 223번지	1,713.0	-	1,713.0	2011.4.12. (고성군고시 제2011-34호)	노 외 주차장

다) 녹지 결정조서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 지	완충 녹지	고성읍 울대리 220번지	7,844.7	-	7,844.7	2011.4.12. (고성군고시 제2011-34호)	선형변경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녹 지	· 변경 -선형변경	· 산업시설용지의 일부 확장에 따른 완충 녹지 시설 선형변경(면적 증감 없음)

라) 보건위생시설(도축장) 결정조서 (변경)

○ 도축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도축장	고성읍 울대리 219번지	26,609.9	증) 1,094.1	27,704.0	고성군고시 제2011-34호 (2011.4.12.)	

○ 도축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도축장	· 변경 - 면적 : 26,609.9㎡→27,704.0㎡ [증)1,094.1㎡]	· 가동 중인 기존 수질오염방지시설(400㎡/일)의 노후화로 인한 처리효율 저하에 대비하여 시설의 추가 증설(194㎡/일)이 필요하며, 또한 기계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의 증축을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일부 확장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BL1-1	BL1	27,542.5	증) 1,094.1	28,636.6	고성읍 울대리 219번지 일원	26,609.9	증) 1,094.1	27,704.0	산업 시설
BL1-2					고성읍 울대리 218번지 일원	932.6	-	932.6	지원 시설
BL2	BL2	4,969.9	-	4,969.9	고성읍 울대리 221번지 일원	4,969.9	-	4,969.9	지원 시설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L1-1	BL1-1 (고성읍 울대리 219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제21호 다목의 도축장 및 라목의 도계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20m 이하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강조색 : 저채도의 무채색은 지양
BL1-2	BL1-2 (고성읍 울대리 218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수질오염방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20m 이하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강조색 : 저채도의 무채색은 지양
BL2	BL2 (고성읍 울대리 221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5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전시장)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차목 및 타목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20m 이하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강조색 : 저채도의 무채색은 지양
		건 축 한계선	범 위	BL2와 중로1-43호선의 경계로부터 5m
			제한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재, 조정시설, 휴게시설, 보행자통로, 지하설비구조물 외 일체의 시설물 설치 불가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전까지 녹화조경 및 휴게시설(긴의자)를 설치하여 공개공지로 운용 			

□ 고성군계획시설(녹지, 보건위생시설:제일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357-1번지 일원(제일농공단지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제일농공단지 조성사업

○ 명칭 : 고성군계획시설(녹지, 보건위생시설)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녹지: A= 7,844.7㎡(전체)

- 금회 대상 A= 348.5㎡(선형변경, 면적변경 없음)

○ 보건위생시설(도축장)

- 전체[당초: A= 26,609.9㎡→ 변경: 27,704.0㎡(증 1,094.1㎡)]

- 금회 대상 A= 1,094.1㎡(면적 증가분)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9

○ 성명: 당초 제일리버스(주) 대표이사 오만호

→ 변경 제일리버스(주) 대표이사 황창윤

5.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기일

○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협의시

고성군계획시설(녹지, 보건위생시설: 제일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협의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357-1번지 일원(제일농공단지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제일농공단지 조성사업
 - 명칭 : 고성군계획시설(녹지, 보건위생시설)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녹지: A= 7,844.7㎡(전체)
 - 금회 대상 A= 348.5㎡(선형변경, 면적변경 없음)
 - 보건위생시설(도축장)
 - 전체[당초: A= 26,609.9㎡→ 변경: 27,704.0㎡(증 1,094.1㎡)]
 - 금회 대상 A= 1,094.1㎡(면적 증가분)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9
 - 성명: 당초 제일리버스(주) 대표이사 오만호
→ 변경 제일리버스(주) 대표이사 황창운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2021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관계도서: 실음생략(고성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 녹지(완충녹지)

구분 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조서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5,853	348.5						
1	고성군 울대리	360	구거	2,925	42.3	농림수산부	국				
2	고성군 울대리	357-1	답	1,122	248.2	제일리버스(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9				
3	고성군 울대리	886-2	구거	1,806	58.0	국토교통부	국				

- 보건위생시설(도축장)

구분 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조서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3,697.7	1,094.1						
1	고성군 울대리	360	구거	2,925	111	농림수산부	국				
2	고성군 울대리	357-1	답	1,122	371	제일리버스(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9				
3	고성군 울대리	886-2	구거	1,806	263.6	국토교통부	국				
4	고성군 울대리	220	공	7,844.7	348.5	고성군	국				

[붙임 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농공단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조서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고성읍 울대리	218-0	잡	932.6	932.6	제일리버스(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9			
2		219-0	장	26,609.9	26,609.9	제일리버스(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9			
3		220-0	공	7,844.7	7,844.7	고성군	공			
4		221-0	대	4,969.9	4,969.9	제일리버스(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9			
5		222-0	도	1,359.6	1,359.6	제일리버스(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9			
6		223-0	차	1,713.0	1,713.0	제일리버스(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9			
7		357-1	답	1,122.0	619.2	제일리버스(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9			
8		360	구	2,925.0	153.3	농림수산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9			
9		886-2	구	1,806.0	321.6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9			
		합계		49,282.7	44,523.8					

고성군 고시 제2021-250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20.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17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하이면 월흥리 871	하이면 월흥7길 56-17	2021.08.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하이면 월흥리)을 이용하는 일곱번째 도로	
2	영현면 연화리 150	영현면 화촌길 88-8	2021.08.20.	건물번호부여신청	자연마을 지명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3	고성읍 수남리 478-1, 478-11	고성읍 공릉로 3045-2	2021.08.20.	건물번호부여신청	공릉발자국 화석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	
4	하일면 춘암리 산169-1	하일면 춘암2길 16-43	2021.08.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하일면 춘암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5	구만면 효락리 308-1	구만면 주평1길 50	2021.08.2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구만면 주평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6	회화면 삼덕리 276-1	회화면 옥수길 13	2021.08.20.	건물번호부여신청	자연마을 지명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7	거류면 은월리 641-1	거류면 은황길 44-130	2021.08.20.	건물번호부여신청	도로의 시종점인 거류면 은월리와 통영시 광도면 황리를 연결하는 길임을 반영	
8	개천면 가천리 65-1	개천면 영회로 1159	2021.08.20.	건물번호부여신청	도로의 시종점인 영오면과 회화면을 연결하는 길임을 반영	
9	고성읍 교사리 779	고성읍 사동길 150	2021.08.20.	건물번호부여신청	고성읍의 자연마을인 사동마을의 지명을 활용한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하이면	월흥7길 56-17	2021.08.13.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